

#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4. .
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충주시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을 통하여 주차장 근무자의 복리증진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.
- 나. 교현천, 충의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하여 인근 불법주차 해소는 물론 상가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.
- 다. 주차장의 종류와 용어 등을 관련법과 일치시켜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 [별표 1]
  - 현행 : 일요일, 양력설, 설·추석 연휴기간
  - 개정 : 토요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
- 나. 교현천, 충의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[별표 1]
- 다. 일부 조항의 용어 등 정비 (제3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(1) 입법예고 (2014. 2. 18~ 3. 10) 결과 의견제출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##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7조제1항”을 “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”으로, “노상주차장”을 “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”으로, 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”을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”으로 한다.”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차요금과 가산금) ①         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<u>노상주차장</u>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,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(이하 “민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② ~ ⑦ (생 략)</p>	<p>제3조(주차요금과 가산금) ① -          -----          - <u>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</u>          -----          - <u>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</u>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,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-----          -----.          ----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1]

## 공영주차장 요금표

(제3조 제1항 관련)

구 분	1구획 30분까지 (기본요금)	30분 초과 시 10분마다	월 정기주차
1급지	500원	200원	75,000원
2급지	300원	150원	45,000원

### 비 고

- 이 주차요금은 충주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.
-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,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.
-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, 토요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, 충주시장이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료운영 할 수 있다.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08:3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
### 4. 급지 구분

가. 1급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으로 하되, 지정일 기준 1개월간 1일 평균 교통량(주차장 이용률)이 50퍼센트 이상일 때로 한정하며, 그 외는 2급지로 한다.

나. 유료운영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1급지 : 충주천 공영주차장

2급지 : 금릉 공영주차장, 칠금 공영주차장

-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주차장법

제7조(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)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4조 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)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제15조 (관리방법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.

# **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**

## **1. 비용수반 요인**

- 본 개정안은 주차장 운영방안 개선을 목적으로 무료개방 확대를 통한 시민편의제공, 지역경제 활성화, 근로자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고 제3조제1항의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기위해 개정함으로 이에 따른 비용수반요인이 없음.

## **2. 미첨부 근거규정**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

## **3. 미첨부 사유**

- 본 개정안의 경우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수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과정상에서나 혹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정에서 재정수반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제출함

## **4. 작성자**

- 경제건설국 교통과장 박부규